

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제도와 설비건설업계의 산업연수생 활용 현황

최근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나 3D업종은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이들 업종종사자들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수입하는 국가로 전환한지 오래이다.

건설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능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 한 반면 근로여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현장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7년부터 국내건설현장에도 외국인력을 도입키로하고 지난 97년 6월 2,500명이 도입된 이후 외국인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건설 기능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건설분야의 외국인 산업연수추천단체로 대한건설협회가 지정되어 연수업무를 시작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틀이 잡혔고 연수생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건설현장의 인력난해소 및 국가간 협력증진"이라는 당초의 목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및 연수취업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고 설비건설업계의 외국인 활용 실태도 점검해 본다. 또한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및 연수취업제도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게재하오니 설비건설업계의 많은 참고를 바란다.

[편집자 주]

1. 외국인산업연수제도

1. 목적

외국인산업연수제도는 외국인산업연수생이 대한민국의 연수업체에서 일정기간 연수토록 함으로써 건설산업계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연수생에게는 기술습득과 함께 소득을 높여주며 이를 통해 국가간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93년 1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건설분야는 지난 97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2000년 4월부터 연수생이 일정기간 연수후 취업자격을 득하면 정식근로자로 인정하는「외국인연수취업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2. 도입경위

정부는 건설업계가 3D업종에 속함에 따라 기능인력 수요가 어려워지자 건설기능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건

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생 도입을 위한 「건설분야외국인산업연수에관한지침」을 제정한 후 지난 97년 6월 2,500명이 도입된 이래 2002년 5,000명, 2004년 8,000명이 도입되어 국내 건설현장에서 땀흘려 일하고 있다.

건설분야에는 대한건설협회가 연수추천단체로 지정(건설교통부 : '97.7.8)되어 건설 기능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산업계별 연수추천단체는 제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건설업 : 대한건설협회, 어업 : 수협, 농업 :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다.

3. 법적근거 및 관련법규

① 법적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2,3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4 ~6

- 건설분야외국인산업연수에관한지침

② 관련법규

- 출입국관리법령(출입국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등)
- 건설분야외국인산업연수에관한지침(건설교통부 지침)
- 외국인연수취업자의보호및관리에관한규정(노동부지침)
- 외국인산업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노동부예규)
- 건설분야외국인산업연수운용요령(대한건설협회 요령)

4. 연수개요

① 연수기간 : 건설분야의 산업연수생은 1년 연수 1년 취업이 가능하다. 지난 2000년 4월부터 연수생이 일정기간 연수후 취업자격을 취득하면 정식근로자로 취업하는 「연수취업체」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② 연수대상공사

- 사업비300억원이상 SOC건설공사(공사 잔여 기간 1년6월 이상부터)
- 임대주택 · 국민주택기금지원건립주택건설공사
-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SOC건설공사(석유화학 플랜트 시설공사)

③ 연수업체 자격요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 연수생등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 등을 갖춘 업체
- 연수생등의 이탈방지등 사후관리가 가능하다고 건설협회회장이 인정하는 업체

④ 연수생 허용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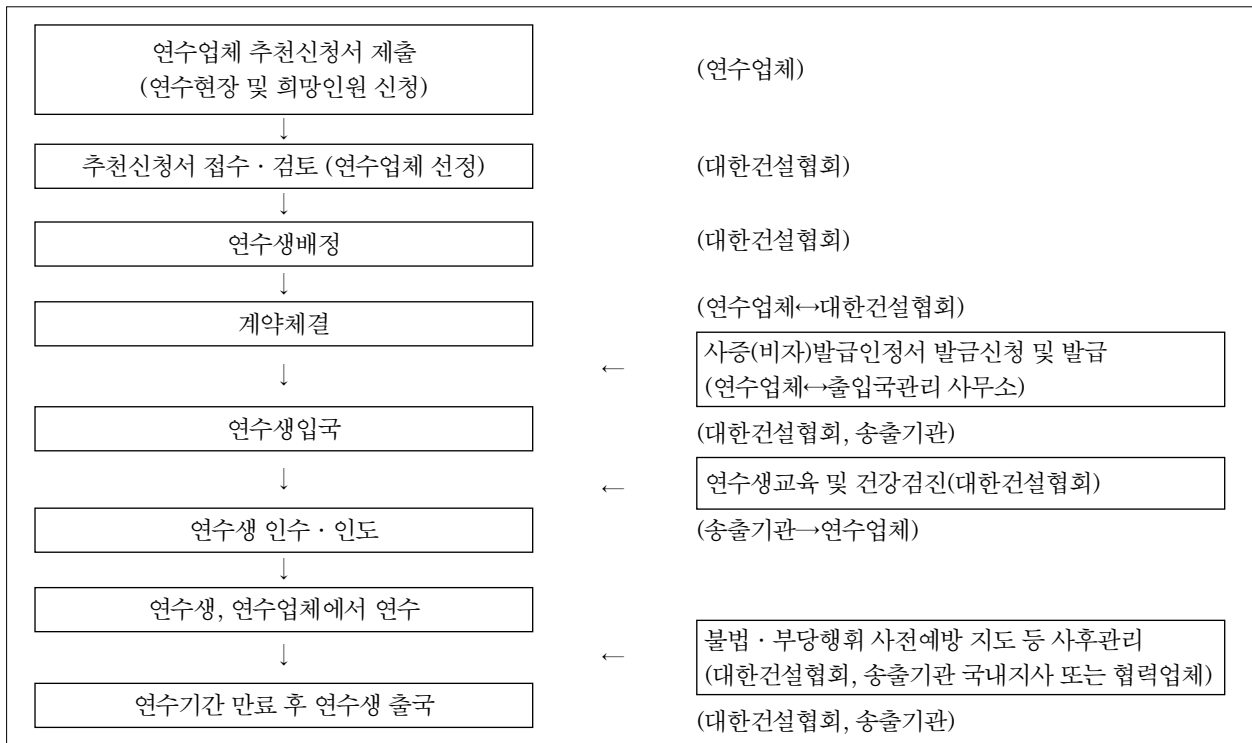
- 연수대상 공사의 연평균 공사금액×1억원당 소요인원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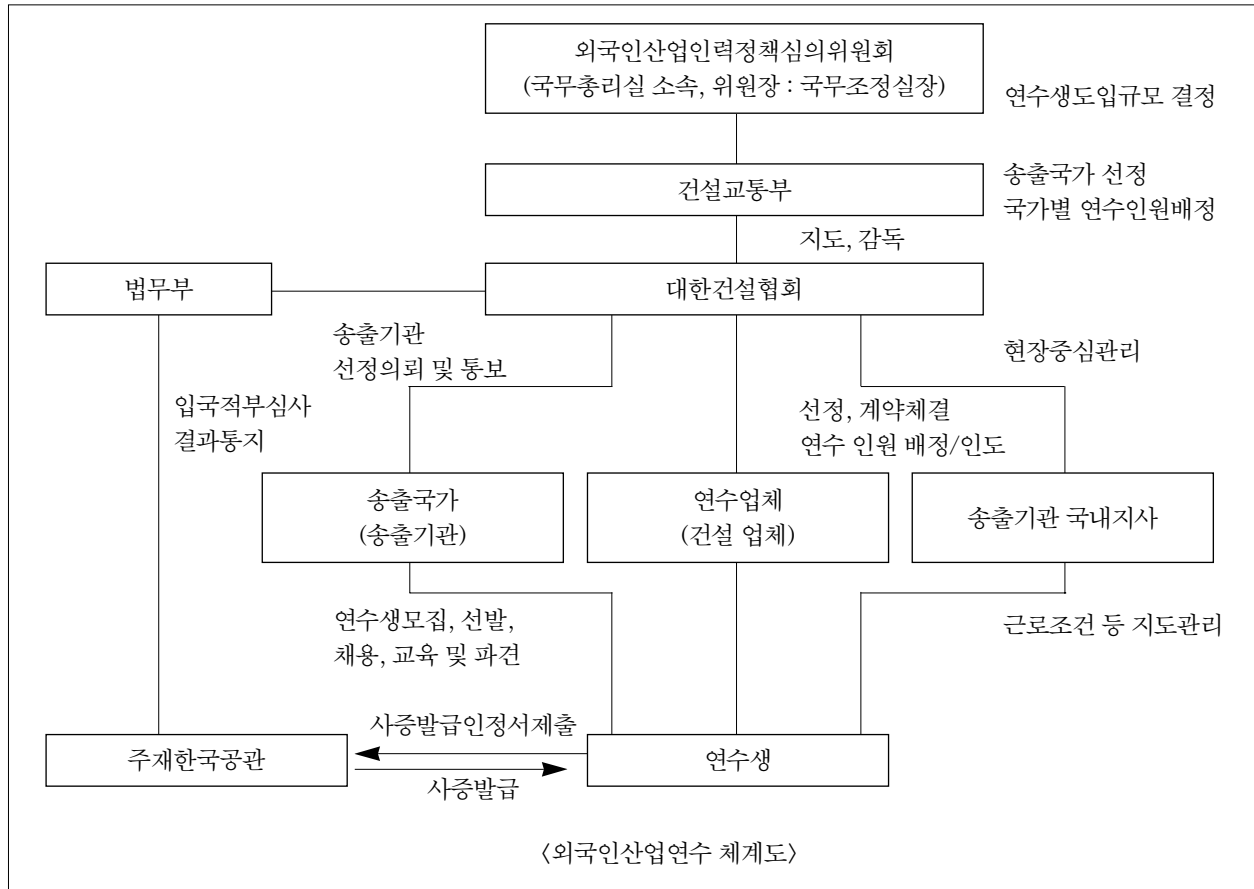
⑤ 연수생 자격요건

- 20세 이상 40세 이하로 신체건강한 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연수업체가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

5. 연수생 도입 절차

①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절차





II. 연수취업제도

1. 연수취업(E-8)자격 취득 요건 완화

현행 1년간 산업연수를 마친 연수생이 연수취업(E-8)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취업교육을 이수토록 되어왔으나 지난 2004년 8월 18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24조의 5」에 의거, 이를 폐지하였다.

2. 연수취업제도 개요

연수취업제이란 산업연수생 자격(D-3)을 가지고 1년 동안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연수한 연수생으로서 연수업체의 장이 추천하고, 기술자격 검정 등 연수취업요건을 갖추고, 법무부로부터 연수취업자격(E-8) 허가를 받은

경우 1년간 연수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① 연수취업제도 변경 등에 따른 구분

구분	적용 대상
2년 연수 1년 취업	02. 4. 27 이전 입국자
1년 연수 2년 취업	02. 4. 28 ~ 02. 12.31 입국자
1년 연수 1년 취업	03. 1. 1 이후 입국자

3. 연수취업제도 운영

① 연수취업(체류자격 변경)의 전환요건

연수기간이 만료된 연수생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 5 제1항에 규정한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그 체류자격의 변경을 허가받은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 연수업체에서 연수생으로 1년간 연수한 자

※ '02.4.28 이전에 입국한 산업연수생은 2년간 연수한자

이어야 함.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의 서식을 활용해 연수취업계약을 체결한 자

② 연수취업자에 대한 관리

연수취업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연수생으로 근무한 업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업체의 장의 동의를 받거나 기타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 5 제2항).

연수취업자에 대한 취업기간 중의 문제는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③ 연수취업자의 신분

연수취업자는 고용업체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 및 신분상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 처우비교

산업연수생	연수취업
노동 3권, 퇴직금, 상여금, 연월차 수당을 제외하고 국내근로자와 동등대우 (최저임금, 산재·건강보험, 시간의 수당혜택)	국내근로자와 동등 대우

노동 3권, 퇴직금, 상여금, 연월차 수당을 제외하고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최저임금, 산재·건강보험, 시간의 수당 혜택)를 받는다.

④ 참고사항

산업연수생이 연수취업자격(E-8)허가를 받은 경우, 연수 취업자는 연수업체의 연수생 배정인원에 포함된다.

연수취업자의 신분상 변동(이탈, 출국)이 있을 경우 관련 서식에 의해 대한건설협회 및 송출기관 국내지사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취업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절차

담당부처 : 고용업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허가기간 : 체류기간 1년 종료 후 출국

신청서류(서식세트4)

- ①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1부
 - ② 표준근로계약서 1부
 - ③ 연수업체장의 추천서 1부
 - ④ 신원보증서 1부
- 준비물
- ⑤ 여권
 - ⑥ 외국인등록증
 - ⑦ 정부수입인지 1인당 50,000원

□ 국가별 외국인 연수현황

2005. 12. 31 현재

국 적	국가배정	업체배정	입 국	출 국	이 탈	취 업	연 수	이탈율(%)
태국	6,410	6,847	6,046	1,609	664	1,982	1,791	4.4
중국	7,422	8,410	7,904	3,490	811	2,031	1,572	3.0
필리핀	3,350	3,160	2,559	721	240	721	877	4.5
베트남	2,238	2,065	1,470	60	340	527	543	16.7
우즈벡	830	317	295	46	98	76	75	12.1
캄보디아	150	0	0	0	0	0	0	0.0
파키스탄	150	0	0	0	0	0	0	0.0
동티모르	200	100	0	0	0	0	0	0.0
합 계	20,750	20,899	18,274	5,926	2,153	5,337	4,858	5.1

건설분야 외국인산업연수제도와 설비건설업계의 산업연수생 활용 현황

□ 업체별 연수생 현황

2005. 12. 31 현재

업체명	배정인원	태 국	중 국	필리핀	베트남	우즈벡	동티모르	연수인원 (이탈자포함)
광장설비(주)	9		9					8
국제산공(주)	15				15			15
(주)국제플랜트	16	16						10
(주)급화피에스시	45			45				24
(주)김앤디	19					19		11
대보실업(주)	60	14	46					59
대아공무(주)	10			10				8
(주)동양설비	23		23					23
(주)동인엔지니어링	142	89	53					73
법동건설(주)	80			80				69
범호기업(주)	15				15			15
산양공영(주)	20				20			20
삼진공작(주)	18		18					17
삼표이앤씨(주)	48			48				47
석원산업(주)	218		53	165				85
(주)성아건설	17		17					17
성운기공(주)	22		22					22
성창기공(주)	106	17		89				26
성호건설(주)	30		30					29
세보엠이씨	20				20			10
세일기계설비(주)	10			10				
아진이앤씨(주)	18		18					
여흥건설(주)	70	70						17
우림플랜트(주)	10			10				
웅남기공(주)	272	137		135				152
(주)유일건설	14		14					14
유창플랜트	65			65				42
정진공영	38			38				
정풍개발(주)	59			59				6
지에스네오텍(주)	10		10					10
(주)코스틸M&C	12			12				12
특수건설(주)	17		17					13
(주)한두씨씨	22		22					2
(주)한산기연	1		1					
(주)한신스틸콘	28			28				1
(주)한은이앤씨	21		21					20
현우실업(주)	66	66						26
(주)효명	268	27	241					204
흥한개발(주)	11				11			

*** 연수인원은 국내체류인원임

Q&A로 알아보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

Q 1. 외국인산업연수제도란?

A 외국인산업연수제도는 외국인산업연수생이 대한민국의 연수업체에서 일정기간 연수토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은 인력난을 완화하고 연수생에게는 기술 습득과 함께 소득을 높여주며 이를 통해 국가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97.7.도입)

※ 현재는 연수생이 일정기간 연수후 취업자격을 득하면 정식근로자로 인정하는「외국인연수취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건설분야 연수생도입국가(8개국)

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동티모르.

Q 2. 외국인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의 체류기간은?

A 2002.4.27일 이전 입국자 [2년연수 + 1년취업]

- 2002.4.27~2002.12.31일 입국자 [1년연수 + 2년취업]
- 2003.1.1일 이후 입국자 [1년연수 + 1년취업]

- 연수생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연수취업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2년이며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출국하여야 함.

Q 3. 연수업체별 연수생 배정 산출방법은?

A 연수대상공사별로 연평균공사금액에 1억원당 소요인원 계수를 곱한 소요 인원을 기준으로 아래 산식에 의거 배정인원을 산출

- 1억원당 소요인원 계수

구 분	SOC공사	주택공사
원도급공사	0.5	0.4
하도급공사	0.65	0.52

산정에) A전문건설업체가 도로공사를 공사기간 2년, 공사계약금액이 200억원 일 때 배정 받을 수 있는 인원은?

⇒ 연평균공사금액이 100억원이고 1억원당 소요인원계수가 0.65인이므로 $100 \times 0.65 = 65$ 따라서, 65명을 배정 받을 수 있음.

Q 4. 외국인연수생을 배정 받을 수 있는 대상공사와 신청자격요건은?

A 대상공사

- 사업비 300억원 이상 SOC 건설 공사

※ 사업비 300억원 :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공사의 경우 총공사 부기금액) 기준이며, 대상공사를 하도급 받은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300억원 미만이라도 원·하도급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신청가능

-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 건립주택건설공사
-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SOC건설공사 (석유화학, 플랜트시설 공사)

※ 신청자격요건

-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 ② 연수생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 등을 갖춘업체
- ③ 연수생의 이탈방지 등 사후관리가 가능한 업체
- ④ 상기의 연수대상공사현장 중 잔여공사기간이 1년6월 이상인 현장을 시공중인 건설업체(하도급자 포함)

※ 구비서류

- ① 연수업체 추천신청서 1부(서식세트 6-14)
- 연수업체는 신청서 작성시 협회에 선정 등록된 송출기관 중에서 1기관을 선택하여야 함.
- ② 연수현장개요 및 사후관리계획서 1부(서식세트6-15)
- ③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⑤ 원·하도급 계약서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인가서, 승인서) 사본 1부
- 원도급업체는 도급계약서 사본제출, 하도급업체는 원·하도급계약서 사본 제출 (원본대조 필)
- ⑥ 숙박시설 증빙서류(사진 등) 또는 숙박시설 설치계획서
- ⑦ 계약보증서 사본

Q 5. 연수취업제도란?

A 연수취업제도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산업연수생 자격(D-3)을 가지고 1년 동안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연수한 연수생은 연수취업자격을 취득되며 추가 1년간 연수 업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또한, 연수취업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 및 신분상의 지위를 가지게 됨.

Q 6. 연수취업자의 근로조건은?

A 연수취업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 받게되며, 내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우를 해야함.

- 연수취업자와 고용업체는 상호간 협의로 근로조건(기본급 및 제수당)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퇴직금·연차휴가를 적용 하여야함.
- 퇴 직 금 : 체류자격변경시점 부터 1년 만기근무시 30일분의 평균임금 지급
- 연차수당 : 1년 만기 근무시 10일, 9월이상 근무시 8일의 유급휴가 제공

Q 7. 외국인등록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연수업체는 연수생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하며, 지정 기한 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5조(벌칙금)7항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연수생을 인도 받은 후에 연수생과 동행하여 필히 외국인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록

후 외국인등록증은 연수기간 중 연수생이 항시 소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발급절차
외국인등록신청 → 신청사항확인 → 등록 수리영수증교부 → 신청후 10일 이내 등록증교부
 -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 ① 외국인등록신청서 1부
 - ② 연수생여권
 - ③ 연수생 천연색 사진(반명합판 3×4cm)3매
 - ④ 연수생건강진단서(협회가지정된 검사기관에서 2주내에 연수업체로 발송) 1부
 - ⑤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가입 증명원(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사본 1부
 - ⑥ 대한건설협회 연수추천서 사본 1부
 - ⑦ 연수확인서 1부
 -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⑨ 외국인등록증발급수수료 : 정부수입인지(10,000원/1인)

Q 8. 연수생 입국후 이탈자에 대하여 대체인원을 받을 수 있는지?

A 연수생이든, 연수취업자든 도주이탈자에 대해서는 대체인원을 신청하실 수 없으며, 그 인원들은 연수업체 배정인원에 포함됩니다.

※ 연수생을 활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이 5명인데 5명을 신청하여 연수 중이던 5명이 모두 이탈하였다면 그 연수생들이 출국하지 않는한 대체인원을 배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Q. 9. 연수만기로 출국하였다가 연수생으로 다시 입국할 수는 없습니까?

A 산업연수생에게는 체류자격기호 D-3-5라는 산업연수 비자가 발급되며,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연수종료후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오기 위해 해당국 송출기관에 선발되더라도 출입국관리소에서 사증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들어 올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연수가 아닌 목적으로 입국은 가능합니다.

Q 10. 외국인연수생 등이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받도록 되어있는데 최저 임금제가 무엇입니까?

A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매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노동부 소관)에서 결정·고시됩니다.

- 연수업체는 연수생 등에게 노동부에서 매년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을 기본연수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9월1일부터 다음연도 8월31일 까지입니다.)

※ 현행 최저임금

- 적용기간 : 2005. 9. 1 - 2006. 8. 31(1년간)
- 시간급 : 3,100원
- 일 급 : 24,800원(3,100 * 8시간기준)
- 월 급 : 700,600원(3,100 * 226시간기준)

Q 11. 연수생에게 상여금을 꼭 지급해야 하나요?

A 산업연수생의 기본 연수수당은 노동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하시고 연장, 야간 및 휴일 연수시 시간급의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수업체에서는 연수조건만 충실히 이행하면 되고, 연수생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Q 12. 연수생 또는 연수취업자에게 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A 산업연수생에게는 휴가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연수취업자(E8)는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수취업자와 체결한 “연수취업계약”, 국내근로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노동관계법”에 정한 바에 따라 대우를 해야 합니다.

Q 13. 연수취업자(연수생)가 본국으로 휴가를 다녀올 경우 임시출국 및 재입국이 가능한지?

A 대한민국에 90일이상 체류하는 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필한 연수생이 그의 체류기간중에 휴가, 개인사유 등으로 본국 방문을 위해 임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 하고자 하는 경우 연수업체 소재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재입국 허가 신청서류
- ① 재입국허가 신청서 1부
- ②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③ 재입국 허가동의서
- ④ 정부수입인지(30,000원/1인)

Q 14. 연수취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여부?

A 산업연수생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해 국민연금가입 당연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수취업자의 경우는 연수생 송출국가에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연수취업자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국 연수취업자도 국민연금 가입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수취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은 송출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연수생 송출국 중 국민연금 적용대상 국가 : 태국,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Q 15. 연수취업자의 경우 본국으로 귀환시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연수취업자의 경우는 받을 수 있는 국가가 한정되어 있으며, 외국인가입자의 반환일시금지급은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한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건설분야 외국인연수생 도입 5개국(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크)은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연금가입을 의무화하여 연금지급(장애, 유족, 노령 연금 등)사유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반환일시금은 사회보장 취지에 부

합하지 않아 지급을 제한 함.

Q 16. 출국한 연수생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어떻게 발급 받나요 ?

A 증명발급의 대상

-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은 개인의 정보보호 차원에서 증명발급을 받고자 하는 본인 또는 증명발급 대상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위임자의 대리 신청을 통하여 출입국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임자의 대리신청 :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 위임장의 양식은 없으나 위임장에는 다음의 내용이 명기되어야 함.

-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과 그 관계
- 위임내용
- 위임일자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서류에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수수료 : 1,000원(1통당)
 - 신청장소
-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민원실
- 지방자치단체의 읍, 면, 동사무소(팩스민원 신청)

Q 17. 외국인연수생 체류지 변경신고 및 연수현장 변경신고 절차는?

A 체류지 변경신고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옮겼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또는 시청, 군청·구청에 가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새로운 체류지가 구체류지와 동일한 시·군 또는 구일 경우에도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위의 변경신고의무를 위배했을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8조에 의하여 100만원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연수현장 변경신고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옮겼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새로운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연수현장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이동한 연수현장이 전체류지와 같은 시·군 또는 구일 경우에도 연수현장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위의 변경신고의무를 위배했을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8조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함.

- 기타 변경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수생관리 실무 책자 참고

Q 18. 외국인연수생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A 건설분야 산업연수(D-3-5)사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사증이 발급되므로, 산업연수생을 초청하고자하는 연수업체는 먼저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 외국에 있는 송출기관에게 송부하고, 송출기관은 발급 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여권 및 사증발급신청서에 첨부하여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하여 사증을 발급 받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연수업체 추천서 및 추천연수생현황(협회가 발급함)
- 연수계획서
- 연수세부계획서
- 원·하도급 계약서(주택공사의 경우 인가서, 승인서(원본대조 필))
- 건설업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연수현장 숙박시설 사진(내부·외구 등 촬영한 사진5매 내외)
- 고용보험가입증명
- 전월분 급여대장사본(원본대조 필)